## 선박보안정보 통보 항목의 일부 변경에 대하여



<u>외국에서 일본으로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중요한 알림입니다.</u>

국제선박·항만보안법 (2004년7월1일 시행)에 의하여 외국에서 일본으로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일본에 입항(입역) 하기 24시간 전까지관할 해상보안부서에 「선박보안정보」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, 2018년7월16일부터 통보 항목이 일부 변경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(변경사항)

통보 항목에 다음 항목이 추가됩니다.

- 일본선박
  - → 2016년 12월 9일 이후, 북한 항구에 입항한 이력의 유무.
- 일본선박 이외의 선박
- → 2016년 2월 19일 이후, 북한 항구에 입항한 이력의 유무.
- ※ 이 통보는 선박의 크기, 종류 등을 불문하고 외국에서 일본으로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.
- ※ 이 통보는 일본 항구에 입항할 경우와 특정해역(도쿄만,이세만, 세토나이카이)에 입역할 경우에도 필요합니다.
- ※ 이 통보는 일본에 입항하기 직전의 항구가 외국 항구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. 따라서 일단 외국에서 일본으로 입항한 후에 일본국내를 항해할 경우 다시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.

## ◆ 통보는 어디로 하면 됩니까?

- \* 입항할 항구를 관할하는 해상보안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. 입항할 항구를 결정하지 못한 채 특정해역에 입역할 경우 또는 일본 항구에 입항하지 않고 특정해역에 입역할 경우에는 고시로 정해진 해상보안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. (자세한 내용은 가장 가까운 관구해상보안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)
- ◆ 통보자,통보방법은 어떻게 됩니까?
- \* 통보자···기본적으로는 선장이지만, 선장의 위임을 받은 소유자, 또는 그들의 대리인 (대리점 등) 도 가능합니다
- \* 통보방법 • NACCS 외에 FAX, 서면 우편 송부·직접 제출 등도 가능합니다. 신속하고 확실하게 통보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NACCS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◆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이유로 입항 24시간 전까지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?
- \* 즉시 항구를 관할하는 해상보안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. 다만, 급박한 위난이 있어서 긴급히 입항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항한 후에 바로 통보해야 합니다.

(자세한 내용은 가장 가까운 관구해상보안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)

통보는 일본어 또는 영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선박보안정보의 통보에 관한 문의는 가장 가까운 관구해상보안 본부로 하시기 바랍니다. 해상보안청의 홈페이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기관	담당과	주소	전 화 번 호
제1관구해상보안본부	경 비 과	<b>北海道小樽市港町5-2</b> 홋카이도 오타루시 미나토마치초5-2	0134-27-0118
제2관구해상보안본부	경 비 과	<b>宮城県塩釜市貞山通3-4-1</b> 미야기켄 시오가마시 데이산도리3-4-1	022-363-0111
제3관구해상보안본부	경 비 과	神奈川県横浜市中区北仲通5-57 가나가와켄 요코하마시 나카쿠 기타나카도리5-57	045-211-1118
제4관구해상보안본부	경 비 과	<b>愛知県名古屋市港区入船2-3-12</b> 아이치켄 나고야시 미나토쿠 이리후네2-3-12	052-661-1611
제5관구해상보안본부	경 비 과	<b>兵庫県神戸市中央区波止場町1-1</b> 효고켄 고베시 주오쿠 하토바초1-1	078-391-6551
제6관구해상보안본부	경 비 과	広島県広島市南区宇品海岸3-10-17 히로시마켄 히로시마시 미나미쿠 우지나카이간3-10-17	082-251-5111
제7관구해상보안본부	경 비 과	福岡県北九州市門司区西海岸1-3-10 후쿠오카켄 기타큐슈시 모지쿠 니시카이간1-3-10	093-321-2931
제8관구해상보안본부	경 비 과	<b>京都府舞鶴市字下福井901</b> 교토후 마이즈루시 아자 시모후쿠이901	0773-76-4100
제9관구해상보안본부	경 비 과	新潟県新潟市中央区美咲町1-2-1 니가다켄 니가다시 주오쿠 미사키초1-2-1	025-285-0118
제10관구해상보안본부	경 비 과	<b>鹿児島県鹿児島市東郡元町4-1</b> 가고시마켄 가고시마시 히가시코리모토초4-1	099-250-9800
제11관구해상보안본부	경 비 과	<b>沖縄県那覇市港町2-11-1</b> 오키나와켄 나하시 미나토마치2-11-1	098-867-0118

해상보안청 홈페이지: http://www.kaiho.mlit.go.jp/ope/apply/hoan00.html

- •이 제도는 테러 대책을 위해 외국에서 일본으로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선박의 기초정보나 보안조치의 실시상황에 관한 통보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.
- •통보에 관해 해상보안청으로부터 질문을 받거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.
  -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입항이 금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•통보하지 않은 채 입항한 선장 또는 거짓 통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
- 만약 통보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심각한 입항지연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